

Q&A

1.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학생인권조례에는 윤리의식에 어긋나고,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학교와 교사가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행위 등에 대한 문제를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 행위가 될 수가 있고(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로 인해 학생들의 성적 문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는 동성애, 동성혼,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는 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제29조 학생인권교육 등), 청소년 에이즈 증가 등 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동성애 옹호·조장, 동성애의 보건의적 유해성 등 교육 금지, 회복적 치료·상담 불가(안 제16조: 성 정체성, 성적지향 차별 금지, 안 제30조: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2. 성윤리 파괴, 청소년 성 문란 조장, 올바른 성교육 폐지(안 제16조: 임신 또는 출산 차별 금지, 안 제17조: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성인권 교육 실시)
3. 인성교육 붕괴, 음주·흡연·문신 등 청소년 일탈행위 지도 불가(안 제10조: 학생의 소지품 검사 금지, 안 제7조: 반성문, 서약서 강요 금지, 안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교복 착용 선택)

그리고, 부모가 윤리관,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훈육, 교육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윤리, 음주, 신앙과 관련된 훈육을 하거나, 동성애 성향의 자녀, 성적체성 혼란을 겪는 자녀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제4조 책무,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

아울러,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학칙 등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습니다(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장 차원을 넘어서, 교사의 교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고, 올바른 성윤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 보장은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